

교사범 -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자.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교사범의 성립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을 것, 정범(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있을 것.

교사행위

새로운 범죄결의 - 교사자가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의 고의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함(피교사자가 마음속으로 범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조건 충족).

원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특정범죄를 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교사 X(중범, 교사의 미수가 가능).

A살인교사(나름대로 노력, 영향X) → B(정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범죄의사가 형성된 경우(편면적 교사) 교사 성립 X)

실패한 교사 - 피교사자가 범죄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 예비·음모 처벌

교사의 상대방 - 특정된 타인, 특정되어 있기만 하면 다수인이라도 무방.

피교사자의 성질 - 반드시 책임능력자일 필요는 없음(형

사미성년자를 교사 - 교사범 성립)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인 경우 특수교사가 되어
가중 처벌.

교사행위의 수단

수단의 무제한 - 수단·방법에 제한 없음(명령, 지시, 설
득, 애원, 요청, 유혹, 이익 제공, 기망, 위협 등)

강요·위력·기망에 의한 경우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
범 성립, 교사 X.

교사행위는 묵시적으로 가능. 범죄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은 교사행위 X.

갑(을의 처 A 살해) → A간통하고 있는 현장에 을을 보
내 → 을이 A를 살해한 경우

갑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 X.

단순히 분위기만 조성하는 정도 교사 X, 부작위에 의한
교사 X(범행결의를 하지 않도록 제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새로운 범행결의를 창출
하는 것으로 해석 X).

교사자의 고의

고의는 구체적 고의일 것(특정한 정범과 특정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기수의 고의 - 교사자의 고의는 범죄의 기수,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할 의사.

미수의 교사 -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교사하는 경우

갑(정의 금고에 돈이 없는 걸 알면서) 을에게 그 금고 속의 돈을 절취할 것을 교사할 경우, 갑을 절도죄의 교사 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문제? 미수의 교사는 교사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성립 X(불처벌설, 통설)
범죄인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수사로 활용.

교사의 미수 - 교사자체가 미수.

교사	범행의 결의	실행행위	결과발생
○	○	○	X(교사의 미수, 교사자와 피교사자 미수범 처벌)
○	○	X	X(효과없는 교사, 교사자와 피교사자 예비·음모)
○	X	X	X(실패한 교사, 교사자만 예비·음모)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있을 것.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의 결의 -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실행행위의 정도 - 실행에 착수하는 것으로 충분,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음.

실행행위가 없을 때(효과없는 교사) - 예비·음모 처벌
교사범의 종속성 - 정범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하나, 유책할 필요는 없음(제한적 종속형식).

교사의 착오

1. 질적인 착오 - 절도 교사  절도의 실행의 착수 X,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는 피교사자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교사의 책임 X, 예비·음모로 처벌.

2. 양적인 착오

피교사자가 교사한 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

원칙 - 피교사자의 실행범위에서 책임(공범의 종속성).
살인을 교사했으나 살인미수 - 살인미수의 교사범
특수강도를 교사했으나 강도죄 - 강도죄의 교사범

예외 - 상상적 경합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피교사자의 실

행행위의 법정형보다 교사 범죄의 예비·음모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

강도를 교사했으나 절도 - 교사자는 강도예비·음모와 절도교사의 상상적 경합(강도예비·음모로 처벌, 절도의 교사와 함께 강도의 효과없는 교사로 되므로)

살인을 교사했으나 살인의 고의없이 상해만 실행 - 교사자는 살인의 예비·음모와 상해교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

갑은 을에게 병을 살해할 것을 교사, 을은 승낙 후 병의 손목시계만 절취, 갑은 살인예비·음모로 처벌.

교사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

질적 초과 - 실행된 범죄가 교사된 범죄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범죄인 경우(교사자는 교사범으로 책임 X)

강도를 교사 ➡ 강간시 - 강도예비·음모, 상해를 교사 ➡ 절도시 - 불가벌(상해죄의 예비·음모는 처벌 X), 살인을 교사 ➡ 방화시 - 살인죄의 예비·음모.

양적 초과 - 실행된 범죄가 교사된 범죄와 죄질을 같이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교사자는 초과부분에 대해 책임 X)

절도를 교사 ➡ 강도 실행 - 절도죄의 교사범.

상해를 교사 ➡ 살인 실행 - 상해죄의 교사범.

관련문제

교사의 교사 - 간접교사, 연쇄교사

간접교사 - 교사자와 피교사자 사이에 중간교사자가 개입.

타인에게 제3자를 교사하여 범행. 예) A가 B에게 C를 시켜 D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경우.

타인을 교사  피교사자가 직접 실행 X  제3자를 교사하여 실행.

예) A가 B에게 D를 살해할 것을 교사, B는 C에게 D를 살해하도록 교사.

간접교사와 교사자의 교사행위 및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한 가벌성.

갑은 을에게 A를 구타하라고 교사, 을은 병으로 하여금 정을 교사하여 A를 구타하게 하였다. A는 정의 폭행으로 상해. 갑, 을, 병은 각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교사범으로 처벌.

연쇄교사 - 교사자와 피교사자 사이에 수인의 중간교사자가 개입. 가벌성 인정.

차이점 - 중간에 교사자가 한사람, 두사람 이상이나에 따라 차이.